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서류제공의무의  
검토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구 혜 민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서류제공의무의  
검토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철 수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구 혜 민

구혜민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 원 장    지리학박사    이 정 윤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안 태 건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철 수 (인)

## < 목 차 >

표 목차 .....	iii
Abstract .....	iv
<b>제 1 장 서론 .....</b>	<b>1</b>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3 절 선행연구 .....	3
1. CISG .....	3
2. CESL.....	5
<b>제 2 장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b>	<b>6</b>
제 1 절 CISG .....	6
1. CISG 에서 매도인의 의무.....	7
2. 물품 인도 .....	8
3. 선적수배의 의무 .....	9
4. 서류제공의무 .....	10
5. 물품인도와 서류제공의무의 상호관계 .....	12
제 2 절 Incoterms 서류제공의무 .....	12
1. Incoterms 2020 .....	12
2. F 조건 .....	15
3. C 조건 .....	16
4. D 조건 .....	17
5. Incoterms 2020 와 CISG 의 상호관계 .....	17
제 3 절 한국민법·상법 서류제공의무 .....	19
1. 한국민법 .....	19
2. 한국상법 .....	20
제 4 절 공통 유럽매매법 (CESL).....	21
1. 계약 당사자 간 표준 정보 제공 의무 .....	22

2. 계약 전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23
<b>제 3 장 서류제공의무 위반 사례 분석 .....</b>	<b>26</b>
제 1 절 서류 미제공 · 불일치 .....	27
1. 서류 미제공 .....	28
2. 서류 불일치 .....	31
제 2 절 물품적합성 .....	32
1. 물품에 관한 정보 .....	32
2. 물품의 품질 증명 .....	34
3. 기술 서류 .....	35
제 3 절 서류제공의무 위반 판단기준 .....	37
1. 서류 해석상의 불일치.....	37
2.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	38
3. 물품의 증명과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련한 서류 .....	40
<b>제 4 장 CISG 서류제공의무의 개선방안 .....</b>	<b>41</b>
제 1 절 CESL 정보 제공 의무.....	41
1. 서류의 해석.....	42
2. 전자적 수단의 정보 제공 의무.....	43
제 2 절 CISG 와 CESL 의 서류제공의무 비교 .....	43
1. 서류의 해석 .....	44
2. 서류 부적합의 보완 .....	45
3. 서류제공의무 위반의 구제 .....	47
제 3 절 개선방안 .....	50
<b>제 5 장 결 론 .....</b>	<b>51</b>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51
제 2 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54
<b>&lt; 참고문헌 &gt; .....</b>	<b>56</b>

< 표 목 차 > .....	iii
< 표 1 >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 규정 .....	14
< 표 2 >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보안관련 서류 규정 .....	14
< 표 3 > 서류제공의무 위반 사례 .....	27
< 표 4 >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사례 .....	40
< 표 5 > CISG와 CESL의 비교 .....	48



The Review and Improvement of Handing over of Documents in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Ku, hye-m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logo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central stylized figure that resembles a compass needle or a lightning bolt, pointing upwards. The figure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globe or a similar circular pattern. The word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re written in a circular path around the top half of the emblem, and the Korean text "부경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bottom half.

**Abstract**

Although CISG is a successful agreement in that it has achieved unity in international commerce, it needs to be revised according to the times.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ocument trading before moving goods. It can be said that the transaction is completed and the obligation is fulfilled only when the handing over of documents is complete. Although Articles 30 and 34 of CISG have provisions concerning the seller's obligation to provide documents, the problem is that they do not mention the details of the documents, such as the type, timing and location. In the absence of such explicit provisions, the parties have supplemented the provision of documents with Incoterms. Unlike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ISG, now general documents and security documents are important including delivery of goods. Therefore, the inclusion of explicit provisions in Articles 34 of the CISG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ESL will help resolve the disput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물품매매는 각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물품매매에 관한 법과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통일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을 준거법으로 두고 있다.

CISG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CISG 제정 당시의 상황과 달리 현시대의 물품매매거래에서 일반적인 무역서류 뿐만 아니라 보안서류도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품의 이동 이전에 서류거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 교부가 온전히 끝나야 거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CISG의 제30조와 제34조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 제공 시기, 장소 등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들은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 등으로 서류 제공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여 왔다.

본 연구는 CISG 제30조, 제34조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계약위반의 판례와 문헌 연구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CESL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CISG 개정시 서류 제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CESL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서는 CISG 제30조의 매도인의 의무 조항과 제34조 서류제공의무 요건, 한국민법과 Incoterms, 공통 유럽매매법에서의 서류제공의무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CISG의 분쟁 사례 중 서류제공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을 서류 미제공·불일치, 물품 증명에 관한 서류, 서류제공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판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CISG의 서류제공의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더 넓은 개념들을 적용하고 있는 CESL 정보 제공 의무 조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서류제공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규정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제공하는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를 참고하였다.

### 제3절 선행연구

본 논문은 먼저 CISG 제34조 ‘서류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된 국내문헌을 분석하였다.

#### 1. CISG

김재성, 박세훈, 윤동희(2010)<sup>1</sup>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인도의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서류 중에서도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운송계약당사자, 운송 계약 이행장소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상만(2011)<sup>2</sup>은 CISG에서는 서류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Incoterms 2010에서는 상업송장은 모든 규칙에서 공통적으

---

<sup>1</sup> 김재성, 박세훈, 윤동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47(0), 2010, pp.49-78.

<sup>2</sup> 김상만,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0(102), 2011, pp.127-160.

로 요구되고 기타 서류는 각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인도할 서류에 대해서는 Incoterms 2010를 살펴볼 것을 제시했다. 또한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서류 인도 의무의 해석을 위해서는 CISG와 Incoterms 2010에 대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남규(2011)<sup>3</sup>, (2013)<sup>4</sup>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 인도 및 서류 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를 Incoterms 2010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도 서류 교부를 강조하며 서류를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로 나누어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Incoterms의 조건들과 협약의 충돌, 다른 서류와의 법적 성질의 차이로 일어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종석(2012)<sup>5</sup>은 CISG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무역실무에서는 Incoterms에 준거하여 서류를 포함한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허은숙(2010)<sup>6</sup>, (2011)<sup>7</sup>은 매도인의 서류 교부 의무는 물품매매의 특성상 거래의 안정성과 계약의 엄격이행, 신용장관습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협약의 적용 시 ‘서류교부의무의 엄격한 이행 원칙’이 준수되어야 영국의 매매법 원칙과도 조화를 이룰 것이며 협약이 통일적인 국제 물품매매법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sup>3</sup>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교부서류에 대한 엄격일치원칙의 적용가능성 연구”, 무역상무연구, 51(0), 2011, pp.187-210.

<sup>4</sup>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CISG와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60(0), 2013, pp.3-26.

<sup>5</sup> 심종석,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4(2), 2012, pp.335-370.

<sup>6</sup>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해상화물운송장의 인도증명서류로서의 적합성”, 해운물류연구, 26(2), 2010, pp.253-272.

<sup>7</sup> 허은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통상정보연구, 13(3), 2011, pp.459-485.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비신용장결제방식의 서류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2. CESL

박희호(2015)<sup>8</sup>는 CESL(유럽공동매매법)의 계약불합치에 관한 규정을 CISG, DCFR(유럽공동기준초안)과 비교하였다. 계약불합치에 대하여 CESL에서는 DCFR의 입장을 수용하였지만, 국제 거래 간에 합당한 규범을 찾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활용될지 의문이며 법리의 단순성 측면에서는 CISG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심갑영, 심종석(2015)<sup>9</sup>은 CESL과 CISG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를 비교하고 나아가 매수인의 구제수단까지 비교 분석하여 예견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오석용(2016)<sup>10</sup>은 CESL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과 그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CISG 규정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에 CESL과 CISG를 비교하고자 했다. CESL의 추완권에 관해서는 CISG와 전반적으로 유사했으나, CESL은 매도인의 추완권을 사업자간 계약(B2B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매수인이 소비자인 계약(B2C계약)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국제거래규범에서는 볼 수 없는

---

<sup>8</sup> 박희호, “유럽공동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9(2), 2015, pp.417-438.

<sup>9</sup> 심갑영, 심종석, “유럽공동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0(4), 2015, pp.51-72.

<sup>10</sup> 오석용, “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5(0), 2016, pp.131-155.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CISG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 제2장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 제1절 CISG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상이한 법과 해석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법에 관한 논의 끝에 1980년 4월 11일에 UN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을 채택하였다. 2020년 9월 현재 CISG 가입국은 90개국에 이르며,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계약국 내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어도 CISG가 적용된다. CISG의 적용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배제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sup>11</sup>

현재 국제거래에서는 서류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Incoterms의 경우 시대적 무역 관습을 반영하여 전자무역, 보안정보와 같은 서류통신에 관한 조건들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해왔다. 이는 9.11 테러 이후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CISG는 명시적이지 않은 부분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였거나,

---

<sup>11</sup> CISG 제6조.

관습으로 해석하여왔다. 겉으로 보기에 CISG는 통일매매법으로 성공적인 준거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존재,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CISG가 쓰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국제 무역 거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CISG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무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제34조 서류제공의무에서도 서류 제공의 장소, 시기, 종류 등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CISG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조건이 조금 더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 1. CISG에서 매도인의 의무

CISG는 4편, 10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도인의 의무는 제3편 제2장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에서 다루고 있으며 매도인의 의무 총괄에 관한 제30조와 제31조(물품 인도), 제32조(운송의 수배), 제33조(인도시기), 제34조(운송서류의 교부)로 규정되어 있다.

제30조는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부분이다. 본 조항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과 CISG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와 물품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는 것이지만, 그 물품의 소유권이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CISG에서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 2. 물품 인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물품 인도 의무이다. CISG 제31 조에서는 매매계약이 물품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운송 포함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경우로 나누며 인도장소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물품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전달하였을 때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 간 합의가 없으며 특정물과 특정물 중 일정 수량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제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이 특정 장소에서 생산,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의무를 다하게 된다.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의 점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 장소에서 수령 이외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그 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었다면, 매수인이 물품 수령을 하지 않았어도 매도인은 물품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

물품 인도 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별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했어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sup>12</sup>

---

<sup>12</sup> 김상만,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

하지만 CISG는 물품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무만을 다루고 있고 물품의 소유권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CISG뿐만 아니라 Incoterms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품매매거래에서 소유권이전 의무는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CISG에서는 소유권이전에 대해 각 나라의 법체계가 상이하고 통일된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sup>13</sup> 따라서 물품에 관한 소유권이전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된 중재법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 3. 선적수배의 의무

CISG 제32조에서는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추가 의무로 다음과 같이 선적수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이외에 화인(Shipping mark), 선적 서류 등으로 인도 물품이 특정물임을 밝혀야 한다. 물품은 특정은 매도인이 선적할 때나 선적 전에 매수인의 주소와 이름을 화인에 포함시키거나, 매수인을 수하인이나 물품 도착 시 착하 통지처로 명시한 선적서류를 확보하는 물품을 계약에 확인시키는 행위이다. 물품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 하는 탁송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주위 사정에 따라 적합한 운송수단과 적용 조건에 따라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이 특정 운송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에 명

---

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0(102), 2011, pp.127-160.

<sup>13</sup> 이천수, 이양기, “CISG에서 당사자의 구제권 선택 및 행사상의 제문제”, 산업경제연구, 16(1), 2003, pp.227-247.

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수인이 특정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한다.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CISG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보험 부보와 관련하여서는 인도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 한계를 분리하기에 상대방에 대한 부보 의무는 없으나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부보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의무로서 제공해야 한다.

#### 4. 서류제공의무

CISG 제34조에서는 제30조에 언급된 매도인의 의무를 구체화하며 매도인의 의무인 서류제공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즉 매도인은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면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매수인이 계약 시 요청한 서류(수출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보험서류)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이 서류 제공 시기 이전에 서류를 제공했으나 서류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서류의 부적합이란 서류가 계약에 어긋난 모든 경우를 말하며 예시로 잘못된 서류, 미비된 서류, 숫자가 부족한 서류 등을 말한다. 이러한 보완과 관련한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과 비용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서류 제공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서류의 부적합에 관한 치유는 제48조(인도기일 후 보완)에서 규정되어 있다.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구제수단에는 이행 청구권, 이행을 한 추가기간의 지정권, 인도기일 이후의 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감액청구권, 그리고 물품 일부의 불일치와 조기인도, 수량초과인도에 의한 하자보완 내지 물품수령의 거절 등이 있다. 비록 서류의 부적합을 교부해야 하는 시기까지 치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로부터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과 관련하여 서류가 언제 제공되어야 하며, 또 어떤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이는 CISG의 1939년과 1956년의 초안에서 매도인이 관습, 관례에 따라 물품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1964년 헤이그회의에서 서류 제공 시 계약이나 관습을 따르도록 하는 언급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의사나 관습, 관행에 따르거나 통상적으로는 Incoterms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에 따르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은 Incoterms의 조건들이 어떤 서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5. 물품 인도와 서류제공의무의 상호관계

무역거래에서는 물품매매거래의 비중이 높고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물품 인도 의무와 서류제공의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물품 인도의무에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은 계약에 적합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해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만, 국제거래에서는 격지 간 거래이므로 물품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물품은 운송인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물품대금은 주로 은행을 통해 운송서류와 교환으로 대금결제 이루어진다.<sup>15</sup>

따라서 물품매매계약상 운송서류는 물품 인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CISG는 물품 인도 의무와 서류제공의무를 밀접한 관계로 강조하며 매도인의 의무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의 의무는 위의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인도의 의무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Incoterms 서류제공의무

### 1. Incoterms 2020

---

<sup>14</sup> 김상만, 전제논문.

<sup>15</sup> 김재성, 박세훈, 윤동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47(0), 2010, pp.49-78.

매매계약에 있어 서류 제공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시적 조건에 따르지만,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류 제공에 관해 명시적이지 않다면 묵시적 조건이나 준거법에 따른다. 이와 관련된 준거법은 앞에서 언급한 CISG가 되고, 서류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조건은 Incoterms® 2020 규칙이 있다.<sup>16</sup>

Incoterms는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에 대한 통일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되었다. 또한 Incoterms 2020을 포함해 총 8차례의 개정을 해왔다. 국제상거래에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개정이 되었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조건을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조건의 변형을 지양하며 무역관습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Incoterms 2020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조항 별 순서를 조정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A와 B로 각 10가지씩으로 나누어져 있다. Incoterms 2010에서 인도서류, 인도 증빙 조항은 A8/B8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Incoterms 2020은 A6/B6으로 조항의 순서를 재배치하였다. 이는 인도서류와 운송서류의 기능을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ncoterms A6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인도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B6에서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서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조건마다 물품인도장소, 위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류도 각각 다르다. EXW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수단에 물품 적재 후 운송하기

---

<sup>16</sup> 신정식,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조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54(0), 2012, pp.99-122.

때문에 매수인에게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W조건을 제외한 각 조건 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 규정

	매도인(A6)	매수인(B6)
EXW	의무 없음	인도수령 증명 제공의무
FCA, FAS, FOB	인도증거서류 제공의무	매도인의 인도증거서류 수령의무
CPT, CIP	운송서류 제공의무	운송서류 수령의무
CFR, CIF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서류 제공의무	운송서류 수령의무
DAP, DPU, DDP	물품인도를 위한 서류제공 의무	인도증거서류 수령의무

<표 2>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보안관련 서류 규정

	매도인	매수인
EXW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과 수출, 수입을 위해 적기에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필요서류 및 보안관련 정보 제공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요구사항을 통지하고,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매도인에게 보상

FCA, FAS, FOB, CPT, CIP, CFR, CIF, DAP, DPU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과 수입을 위해 적기에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필요서류 및 보안관련 정보 제공	◆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요구사항을 통지하고,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매도인에게 보상
DDP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지정 목적지부터 최종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적기에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필요서류 및 보안관련 정보 제공	◆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 수출을 위해 적기에 매도인에게 보안관련 정보를 포함한 서류획득을 위한 지원 제공

## 2. F조건

Incoterms의 F조건은 FCA, FAS, FOB를 말하며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물품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통상적인 증거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의 증거서류가 반드시 운송서류일 필요는 없다.<sup>17</sup> FCA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방식에 따라 화물수취증(Waybill)이 증거서류가 되고, FAS조건과 FOB조건은 재래화물에 적합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운송서류는 아니지만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본선수취증(Mait' s receipt:M/R)이 통상적인 증거서류가 될 것이다.

A2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조건에서는 A4에 따라 매수인이

<sup>17</sup> 오원석, “매도인이 제공하는 인도증빙서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14, 2000, pp.7-35.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서류는 매수인이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이 적기에 반대의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서류의 취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수인의 요청이 있다면, 매도인은 그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매수인에게 협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운송서류의 취득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운송계약을 취득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 3. C조건

Incoterms의 C조건은 CPT, CIP, CIF, CFR을 말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인도의 증거서류가 아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한다.<sup>18</sup> 이 서류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발행되고 선적을 위해 합의된 기간 내의 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다음 매수인에게 유통성선하증권을 양도하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매수인이 운송 중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9</sup> CPT, CIP조건의 인도증거서류는 유통성 선하증권, 도로 화물 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이다. CIF, CFR조건은 앞서 말한 CPT, CIP조건과 동일한 서류뿐만 아니라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

---

<sup>18</sup> 오원석, 전제논문.

<sup>19</sup> 허은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통상정보연구, 13(3), 2011, pp.459-485.

류로 증명할 수 있다.

Incoterms는 서류 제공 시기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나 CFR, CIF조건은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 서류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송중인 물품을 당해 서류의 양도에 의해 제2의 매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20</sup> CFR, CIF조건에서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조금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CPT, CIP의 경우도 운송서류 제시 기간과 서류의 유통 방법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4. D조건

Incoterms의 D조건은 DAP, DPU, DDP로 수입국에서 물품인도가 이루어지는 도착조건이다. DAP조건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려 양하 준비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 때에 인도하는 것이다. DP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조건이다. D조건들은 지정목적지나 그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운송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의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 서류들은 유통성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 서류,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5. Incoterms 2020와 CISG의 상호관계

---

<sup>20</sup> 허은숙, 전계논문.

물품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관습과 준거법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CISG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법을 통일하였고, Incoterms는 다양한 나라들의 관습과 해석기준을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ISG는 매도인의 물품에 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제공의무만을 규정할 뿐, 제공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Incoterms는 구체적인 서류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조건 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송장, 물품인수에 필요한 서류, 통상의 인도 증빙 등으로 서류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류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Incoterms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음에도 Incoterms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에 의해 관습, 관행으로서 CISG의 적용가능성이 높다.<sup>21</sup> 이는 Incoterms의 조건들에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를 구체화하며 계약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Incoterms에서 서류 제공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이 아닌 C조건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서류 제공 장소에 대해 계약에서 합의된 장소가 없다면 Incoterms나 계약의 상황에서 찾아내야 한다. 서류의 제공 형태 또한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Incoterms와 관련되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고 수입통관을 가능하게 해

---

<sup>21</sup> 심종석,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4(2), 2012, pp.335-370.

야 한다. 이 때 서류는 명칭과 기능에 부합하는 법적 요소, 통상적인 서류의 외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CISG는 1980년대에 제정된 것이므로 전자서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ncoterms에서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였거나 관습일 경우 각 조건에서 전자서류를 인정하고 있다.<sup>22</sup>

결론적으로, Incoterms와 CISG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무역발전에 기여하며 역할이 비슷한 듯 하지만 접근방법과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CISG가 당사자들의 의무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법이라면 Incoterms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CISG와 Incoterms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를 정의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제3절 한국민법·상법 서류제공의무

#### 1. 한국민법

한국민법에서 서류제공의무는 소유권이전의 내용에 포함된다. 민법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sup>23</sup> 즉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서류제공이 필요하거나 계약으로 합의된 경우 서류제공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권리를 자유롭게

---

<sup>22</sup> 김상만, 전제논문.

<sup>23</sup> 민법 제568조 제1항.

행사하게끔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은登記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고, 제188조에서는 물권의 양도는 인도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바 있다.

## 2. 한국상법

한국상법에서 서류제공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국내 상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위로 나뉘어진다. 먼저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은 영업상 재산, 손익을 위해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업장부를 10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도 보존이 가능하다. 상법 제96조는 결약서교부의무로써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중개인은 지체없이 당사자들의 성명, 상호, 계약날짜와 조건들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 후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인의 보수는 계약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중개인이 결약서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결약서는 즉시 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기명날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서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중개인은 장부작성의무가 있지만 당사자가 성명,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하지 못한다.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선장에게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상법 제126조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화물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명세서에는 물품의 종류, 중량, 개수, 도착지, 영업소, 운임, 화물명세서 작성지와 날짜 등을 포함하고 송하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로 기재한다면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인은 상법 제128조로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을 제공해야 하며 송하인의 영업소, 상호, 운임, 화물상환증의 작성지, 날짜를 포함하여 서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제공한 때에는 물품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물품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sup>24</sup>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물품의 종류, 품질, 수량, 영업소, 보관장소, 보관비용, 보관기간, 보험금액, 보험기간,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날짜 등을 포함한 창고증권에 서명 후 제공해야 한다.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해 증권을 반환하고 물품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창고증권으로 물품을 담보로 질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임치인은 물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창고증권소지인, 임치인은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물품 검사와 견품을 적취할 수 있다. 이처럼 Incoterms와 유사하게 상법에도 운송장, 창고증권에 대한 서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4절 공통 유럽매매법(CESL)

공통 유럽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은 EU 회원국 간 계약법의 상이함은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단일 시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내에서 계약법을 평준화시키고 물품과 서비스,

---

<sup>24</sup> 상법 제133조.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를 활성화시켜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채택, 보충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안이다.

CISG는 국제적인 통일법이지만 계약 과정에 있어 법적 기준과 해석이 모호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CESL은 명시적인 규정으로 법적 안정성·확실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 CISG보다 넓은 범위에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CESL은 계약을 전체적으로 다루며 국제적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하는 대부분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sup>25</sup> 또한 회원국 간의 거래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용법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두고 있다.<sup>26</sup>

CESL의 제91조에 매도인의 주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물품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타인에게 의무 이행을 위탁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1. 계약 당사자 간 표준 정보 제공 의무

CESL의 부속서 II에는 공통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표준 정보 제공 안내서(Standard Information Notice)가 있다. 사업자는 계약 합의 이전에 소비자에게 표준 정보 제공 안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CESL의 적용에 대해 명시적이고 소비자로부터 합의의 의사표시를 위함이다. 이후 소비자가 안내서를 제공받

---

<sup>25</sup> 박영복,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외법논집, 37(3), 2013, pp37-62.

<sup>26</sup> 심갑영, 심중석,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0(4), 2015, pp.51-72.

고 동의를 한 후에야 CESL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된다.

CESL 적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전화나 다른 수단으로 체결이 된 경우 또는 사업자가 표준 정보 제공 안내서의 제공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sup>27</sup> 따라서 사업자는 모든 세금,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통신수단으로 구매하거나 사업장외의 계약,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 같은 정보들은 더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정보들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 고지가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기타 모든 상황에서 CESL의 문서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sup>28</sup>

## 2. 계약 전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정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계약 주체의 부주의에 따른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29</sup>

CESL에서 계약 체결 전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의무

---

<sup>27</sup> CESL, 제9조 제1항.

<sup>28</sup> CESL, 제9조 제2항.

<sup>29</sup> 임형택,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 59, 2015, pp.117-146

와 사업자들 간의 정보 제공 의무로 나뉜다. 또한 통신판매계약과 사업장외계약으로도 계약유형이 구분된다. 통신판매계약이란 통신판매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까지 오직 원격통신수단만을 이용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sup>30</sup>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했지만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을 합의하고 체결한 경우에는 통신판매계약으로 본다.<sup>31</sup>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은 소비자가 계약에 서명했거나 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 동의를 보낸 경우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저장 매체를 통해 계약 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sup>32</sup>

먼저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될 상품, 디지털 콘텐츠, 관련 서비스의 주요 특성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sup>33</sup> 이 정보에는 상품, 특성 뿐만 아니라 비용, 계약 조건, 철회 권리 등 계약의 필수 부분들이 포함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다만 변경될 수 있는 사업자의 주소는 이러한 목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신원과 주소를 포함해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과 주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물품 대금과 추가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추가운송, 인도 비용 등 청구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지불할 대금, 계약 기간, 계약 물품 운송 시기, 보증금에 대해서도 포

---

<sup>30</sup> CESL, 제2조 (p).

<sup>31</sup> 사업장에서 계약에 대해 합의 후, 원격통신수단으로 계약을 한 경우는 통신판매계약이 아니다.

<sup>32</sup> CESL, 제19조 제4항.

<sup>33</sup> CESL, 제13조 제1항.

함해야 한다.

소비자가 CESL 제4장에 따라 철회권을 가진다면 상품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 제공 개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거래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에게 지불할 비례 금액은 계약에서 합의된 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총 가격이 과도할 경우 제공된 금액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비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철회권 조항에서 요구되어 부록 I 에 명시된 지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계약 시 정보들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의계약에서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내구성 있는 저장 매체로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장 매체는 서면, CD-ROM, DVD, USB, 메모리카드, 컴퓨터하드디스크, 전자우편 등이다.<sup>34</sup> 계약사의 사본, 계약 확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저장 매체로 제공할 수 있다.<sup>35</sup>

사업자들 간에 거래를 할 때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기에 앞서 주요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정보를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 다른 사업자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용이성, 정보의 성격, 중요성, 상업적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고 오해의 소지를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

<sup>34</sup> 김중길,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유럽공동매매법(안)과 개정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3), 2015, pp.45-91.

<sup>35</sup> CESL, 제18조 제1항.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물품 반품 비용이나 기타 추가비용에 대해 구제권을 갖는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보장 의무에 대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다.

### 제3장 서류제공의무 위반 사례 분석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은 서류제공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CISG, Incoterms, 한국민법, CESL로써 살펴보았다. CISG에서는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와 서류제공의무를 포함하며 서류의 부적합의 치유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위반과 서류제공의무 불이행은 계약위반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서류제공의무 위반의 사례들은 물품 인도 의무에 비해 주된 분쟁요소인 경우가 드물며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 위반의 사례 중에서도 서류제공의무를 포함한 사례만을 다루고자 했다. 또한 최신 판례가 적어 CISG 제34조를 위반한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서류제공의무 위반 사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서류제공의무 위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서류제공의무 위반 사례

	사례
서류제공의무	① CLOUT case 1738 : Federal Arbitrazh Court of Far East Circuit, 02/11/2010
	②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③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④ CLOUT case 1128 : Supreme Court, 09/12/2008
	⑤ CLOUT case 488 :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14334/202, 12/02/2002
	⑥ CLOUT case 1037 : Barcelona Provincial High court, 24/03/2009
	⑦ CLOUT case 1110 :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15/10/2009
	⑧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3726

### 제1절 서류 미 제공 · 불일치

현재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서류를 통한 거래는 기본적인 필수적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인 서류 제공은 매매거래에 있어 의무이행과 거래성사의 표시와 같다. CISG에서 물품을 인도받기 위한 서류를 미인도하거나, 인도서류의 불일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효과를 내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sup>36</sup>

## 1. 서류 미 제공

중국인 매도인과 러시아 매수인 사이의 물품매매거래 사례<sup>37</sup>가 있다. 당사자들은 창고용 금속프레임에 대해 계약했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20%의 선금을 입금했다. 또한 계약 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물품대금을 선납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두 달 후, 물품인도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통지서와 선금금 반환 요청을 보냈지만 매도인 측은 그 요구를 무시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sup>38</sup>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는 매수인의 증언과 거래 관련 서류 사본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근거로 2008년 9월 초에 매도인이 필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였고, 물품 선적 준비 완료에 대한 통보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중재법원은 당사자들이 서류 제공 형식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는 판결을 했다. 계약서 제5항을 참고하면 계약 종료 후 5일 이내에 서류 전량을 속달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가 명시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급법원이 고려했던 서류는 중국어로 되어 있어 러시아 중재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인증된 러시

---

<sup>36</sup> 조요셉, 김철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재고찰”, 국제상학, 32(1), 2017, pp. 125-140.

<sup>37</sup> CLOUT case 1738 : Federal Arbitrazh Court of Far East Circuit, 02/11/2010.

<sup>38</sup> CISG, 제49조 제1항 (a).

아 번역서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의무를 다했으며 매수인이 계약 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점은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바 하급법원의 판결은 이른 판단이었고 이 사건은 재심청구를 받게 되었다.

서류 미 제공에 관한 또 다른 사례로 미국 매수인과 중국 매도인과의 사례<sup>39</sup>가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농업용 기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면제받은 중국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았고 매도인도 그 중 한 곳이었다. 그 면제의 결과로, 매도인이 미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하는 절차에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과 계약을 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제공해 반덤핑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3년 후 매수인은 미국 세관으로부터 필요한 기간 내에 서류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98.77%의 반덤핑 관세와 이자를 부과라는 통보와 그 신청은 매도인의 의무라는 점을 통보를 받았다. 매수인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도인에게 변제를 요청했지만 매도인은 이를 거절했고 매수인이 중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합의된 대로 미국 세관에 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수출의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를 숙지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신청서류가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매도인의 주장을 기각하며, 미국 시장에 수출한 매도인의 경험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였으므로 만약 매도인이 그러한 절차를 따를 수 없었다면, 매수인들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매도인은 더 나아가 매수인이 배의 도착 날짜에 대한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이자가 부과된 것은 매도인의 무지와 실수 때

---

<sup>39</sup>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문이며 이는 매수인이 선박 도착 날짜를 알리지 않은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미국 세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류 미제공으로 일어난 분쟁으로 CISG가 아닌 한국의 대법원 판례<sup>40</sup>도 존재한다.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부속서)에 따라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그 외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그 외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와 같은 포괄적인 증명서류에 관한 문구를 둔 것은 개별적인 물품 운송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심<sup>41</sup>에서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에 관한 적법여부 없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기에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

---

<sup>40</sup>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3726.

<sup>41</sup> 대구고등법원 2017.09.08선고 2016누5335.

되었다.

## 2. 서류 불일치

서류 불일치와 관련한 사례로 중국인 매도인과 미국인 매수인 사이의 공업 원재료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sup>42</sup>이 있다. 매수인은 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택했고 공업용 원재료에 관해 계약을 체결했다. 물품이 선적되고 매도인은 화환취결에 임했으나, 신용장의 하자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는 신용장 문면상의 날짜와 선하증권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하자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매수인은 선하증권 날짜 불일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물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매도인은 물품대금 감액 요구를 거절했고 매수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게 물품을 재판매 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매수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하였다.

본 사례에 있어 필요 서류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했고, CISG 제34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판매할 것에 관한 통지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계약해제로서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류 상의 오류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류의 불일치가 계약위반을 구성하지만, 반드시 본질적인 계약

---

<sup>42</sup>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매수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류의 불일치는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은 신의원칙에 따라 물품을 수령했어야 했으며 서류 날짜의 불일치가 물품매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매수인이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매도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제2절 물품적합성

### 1. 물품에 관한 정보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물적, 법적 적합성 입증을 위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로, 미국인 매수인과 스페인 매도인 사이의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sup>43</sup>이다. 매수인은 스페인 매도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sup>44</sup>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매수인은 구매한 물품에 있는 빨강색의 결함이 물품이 만들어질 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매도인은 물품이 수령되기 전 경과된 기간과 색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지 않았던 점을 결함의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법원은 CISG 33조-(b)<sup>45</sup>을 적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매수인이 물품

---

<sup>43</sup> CLOUT case 1128 : Supreme Court, 09/12/2008.

<sup>44</sup> CLOUT case 549.

<sup>45</sup> CISG, 제33조 (b) :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에 따르면, 매수인은 물품을 생산하는데 7일에서 10일이 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강색은 색의 강도를 잃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품 수령이 지연되었고 적절한 운송 수단(냉장)을 사용하지 않아 색의 변형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ex factory'라는 조항에 합의했으며, 그 결과 위험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물품이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 실제 인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만약 상품이 완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수령 지연과 부적절한 운송수단 이용으로 인한 결함(색채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매수인은 CISG 제34조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품질증명서에 물품의 색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수인은 계약 조건과 물품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 수령을 지연하지 않았다면, 수령 즉시 물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품질증명서와 관련한 매수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물품의 색상이 원산지로부터 결함이라는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고, 시간과 운송수단이 물품의 색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도 모를 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매수인은 패소했다.

물품과 관련된 서류의 제공 분쟁 사례로 베네수엘라 매도인과 스페인 매수인이 계약 이행 문제로 소송했다.<sup>46</sup> 법원은 스페인 상법 제329조와 CISG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49조를 인용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불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sup>46</sup> CLOUT case 488 :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14334/202, 12/02/2002.

## 2. 물품의 품질 증명

12.920kg의 냉동 오징어 1,920상자에 대한 판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스페인 매수인과 파키스탄 매도인은 상품 일부의 품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sup>47</sup> 제품의 일부(5.589kg)는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소멸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약된 제품보다 품질이 열악했으며 수량 또한 12.740kg으로 더 작았다. 계약은 CISG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선하증권은 은행 신용장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였다. 계약 물품의 품질과 정확성은 파키스탄 보건 증명서에 의해 다루어졌다. 하지만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던 바르셀로나 항만 보건 당국은 당시 물품의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도인은 CISG 제30조, 제31조 제34조에 의해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었다. 또한 계약에서 요구된 방식으로 물품을 포장하고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했다. 매도인은 수출허가서, 그리고 품질 증명서 등 필요서류와 함께 운송을 주선했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선적항에서 배에 화물을 실었다. 따라서 법원은 CISG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판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도인은 위험 이전 이전의 상품의 부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 3. 기술서류

---

<sup>47</sup> CLOUT case 1037 : Barcelona Provincial High court, 24/03/2009.

기술서류에 관한 사례<sup>48</sup>로 러시아 매수인은 오스트리아 매도인에게 물품(기술장비)의 계약 위반과 장비, 조립, 수수료, 자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물품의 인도와 기술서류의 제공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불했다. 매수인의 주장으로는 매도인이 기술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급물품의 조립을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 매도인은 장비의 조립과 관련된 계약서의 일부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론했으며 매수인이 공급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보류하고, 반소 청구에 대해 계약상 위약금을 적용하거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배상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CISG의 부정확한 적용을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재판부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상품 공급(CISG 제3조 1항<sup>49</sup>)이며 장비의 조립과 관련된 의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도인은 노동력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의 일부를 분리할 수 없었다(모든 조건이 단일 계약에 포함되었고, 단일 지불이 이루어졌으며, 노동력의 비용은 대략 전체의 1% 정도였으며, 그 작업은 매도인 스스로 해야 했다). 상기 관점에서 CISG는 장비의 조립을 포함하여 분쟁 중인 계

---

<sup>48</sup> CLOUT case 1110 :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15/10/2009.

<sup>49</sup> CISG, 제3조 제1항 : 매수인이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급계약은 매매로 본다.

약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전체 사업 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매수인은 장비를 조립하기 위해 다른 계약자를 데려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장비에 대한 보증은 매도인에 의해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증기간 동안 매도인은 공급된 장비의 품질(조립, 시공, 작업조건)을 책임지고 자비(조립, 해체, 운송비 등)로 불량부품을 수리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단점을 보완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장비의 조립과 관련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CISG 제25조 및 계약 조건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 것이다.

매수인이 조립공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장비를 조립하지 못한 것을 주장한 매도인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도 근거가 없다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장비 조립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사전에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모든 장비가 매수인의 창고에 존재한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도인이 장비 조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정품 기술 서류, 등록서류, 장비에 대한 증명서 등을 매수인이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 CISG 제3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매도인은 장비 납품 및 기술서류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매도인의 의무를 벗어난 이유로 최종 인수증서의 서명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통보했다. 2008년 7월 7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장비 조립 거부를 감안하여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재판부는 CISG 제49조를 근거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지 6일 만에 매도인에게 회신을 보냈기 때문에 계약 위반 청구서 제출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비 조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아 장비의 조립과 관련된 계약서의 일부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매도인의 주장은 CISG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했어야 하기에 근거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 제3절 서류제공의무 위반 판단기준

앞선 사례분석에서는 계약에 있어서 서류 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들을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 미 제공·불일치, 물품적합성에 관한 서류제공의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물품 증명 서류와 관련한 본질적 계약위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서류 해석상의 불일치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CISG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계약국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해 정하게 되어 있다.<sup>50</sup>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중재지국의 국제사법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창고용 금속프레임 사건<sup>51</sup>에서 하급법원은 매수인의 증언과 거래 관련 서류, 당사자간의 관계를 근거로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결론 지었지만, 연

<sup>50</sup> CISG, 제1조 제1항 (b).

<sup>51</sup> CLOUT case 1738 : Federal Arbitrazh Court of Far East Circuit, 02/11/2010.

방중재법원에서는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급 법원에서 계약서에 물품이 선적될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중재법원에서는 그 서류는 러시아어 번역서로 보완하지 않은 중국어로 되어있어 러시아 중재법을 위반해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ISG에서는 서류의 언어, 해석과 관련하여 명시되어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중재국의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CISG 제1조 1항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중재지국의 법을 위반했고 서류를 준거법의 언어로써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의 위반이 일어난 것이다.

## 2.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

공업 원재료 사건<sup>52</sup>에서는 신용장의 하자로 인해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서류의 불일치가 계약위반을 구성하긴 하지만,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물품을 수령했어야 했고 서류 날짜의 불일치가 물품매매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재판부는 서류의 불일치는 사소한 부분이며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했다.

미국 매수인과 중국 매도인의 농업용 기계 사건<sup>53</sup>은 매도인에게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서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이다. 반덤핑 관세 서류 심사 신청은 매도인의 의무였으나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관세와 이자를

---

<sup>52</sup>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sup>53</sup>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부과하게 되었다. 본 사건은 서류 제공에 있어 계약 위반은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실질적 박탈이 아니기에 본질적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하자 보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맞추어 서류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이다. 물품의 인도에 있어 통관 서류의 미비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는 이행된 것이 아니며 물품 또한 통관이 되지 않아 매수인에게 인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법원 판례<sup>54</sup>에서는 서류 미제출로 시작한 분쟁이지만 증명서류의 하자 보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판결한 사례이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에서 직접운송의 요건으로 실체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떤 특정 서류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법에서도 직접운송 간주 규정을 두면서 실체적 요건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앞선 사례들로 보아 서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들은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 물품의 증명과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련한 서류

---

<sup>54</sup>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3726.

**<표 4>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사례**

조항	사례
CISG 제34조	① CLOUT case 488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14334/202, 12/02/2002
	② CLOUT case 1037 : Spain: Barcelona Provincial High court, 24/03/2009
	③ CLOUT case 1110 : Russian Federation: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15/10/2009

서류 제공에 있어 계약위반이 발생한다면 계약위반이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 매도인과 스페인 매수인 사건<sup>55</sup>은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출에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판단했다.

기술서류에 관한 사례<sup>56</sup>에서도 매도인이 정품 기술서류, 등록서류, 장비에 관한 증명 서류를 매수인이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CISG 제34조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했으며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물품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계약 위반 사항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서류 제공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은 그 대상을 CISG 제35조 2항이 기준이 되어 본질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 사실이 서류제공의무에 있다면 CISG 제34조에 의해

<sup>55</sup> CLOUT case 488 :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14334/202, 12/02/2002.

<sup>56</sup> CLOUT case 1110 :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15/10/2009.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고 판단된다.<sup>57</sup>

## 제4장 CISG 서류제공의무의 개선방안

서류의 불일치, 서류의 증명 등 서류제공의무 위반에 관한 사례를 제3장에서 검토하였다. 판례 분석 결과 하급법원의 판단이 중재법원에서는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CISG는 서류 입증 책임과 제공 방법, 종류,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준거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국내법에서도 실제적인 서류 제공 규정 외 서류의 종류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판례로써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서류의 종류와 제공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바, 제4장에서는 CESL 조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CISG 제34조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CESL은 CISG보다 계약을 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CISG 서류제공의무의 한계를 CESL의 정보 제공 의무로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제1절 CESL 정보 제공 의무

---

<sup>57</sup> 조요셉, 김철수, 전제논문.

## 1. 서류의 해석

계약 서류의 해석의 일반규칙에 대해 CESL에서는 서류에 사용된 표현과 의미가 다르다면 당사자들의 공통의도에 따라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58</sup> 당사자가 계약에 사용된 표현이 특정 의미를 갖도록 의도한 경우나 계약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예비 협상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당사자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행, 관련 분야의 표현, 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 전체의 관점에서 표현을 해석해야만 한다.

계약 서류가 두 개 이상이며 둘 중 어느 것이 권위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원래 작성된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협상이 된 계약 조건이 불일치가 있는 계약 조건보다 우선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서도 계약 기간이 의심되면 소비자가 해당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우선할 수 있다.

CESL에서는 서류를 작성할 시, 기간(Term)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연도, 월, 주 등으로 표시된 기간은 첫 번째 날이 시작되고 마지막 연도, 월, 주 중에 만료된다. 해당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지만 해당 기간이 명시적으로 제외되거나 근무일로 표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수취인이 회신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시작 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수취인에게 도착한 순간부터 날짜가 계산된다.

---

<sup>58</sup> CESL, 제58조 제1항.

## 2. 전자적 수단의 정보 제공 의무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을 할 때, 사업자는 상대방이 제안을 하거나 수락하기 이전에 입력 오류에 대해 식별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대방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낸 제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수락하여 계약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계약 문서 제출 여부, 계약 조건에 대해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러한 계약 조건을 알파벳, 기타 언어로 제공하고 저장 매체에 포함된 정보를 읽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계약 전 명확하고 눈에 잘 띄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 주문 절차가 시작되면 배송에 대한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지불 수단이 허용되는지 거래 웹 사이트에 표기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 이러한 “주문(Indent)” 버튼은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정보를 쉬운 문구로서 표시하여 제공해야 한다.

### 제2절 CISG와 CESL의 서류제공의무 비교

CISG 제34조에서는 매도인은 협약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면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ESL에서도 제91조에 매도인의 주요 의무를 나열하며 매도인이 계

약의 물품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CESL은 서류 제공 법 적용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에 있어 정보 제공 의무를 입법화했다. CESL은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다루기 때문에 일반 민법과는 연계시킬 수 없지만 물품 매매 거래를 다루고 있는 CISG의 서류제공의무와는 관련 지어 조항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류의 해석

창고용 금속 프레임 사건<sup>59</sup>을 보았을 때, CISG는 서류의 해석이 불일치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중재지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ESL 제61조는 계약 언어의 불일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 문서가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되어있거나, 둘 중 어느 계약서도 계약서 자체의 권위, 권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원문 버전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계약과 관련한 의사소통이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결정할 시에는 계약 체결에 사용되는 언어를 기본으로 한다.<sup>60</sup>

이처럼 중재지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CISG와 달리, CESL은 계약 서류의 버전이 다양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기존의 미리 합의된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우선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의 해석 규정에 있어 CISG처럼 규정되지 않아 중재지법에 따르기 보다 계약 해석에 대한 일반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CESL이 계약에 있어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CESL은 계약을 해

<sup>59</sup> CLOUT case 1738 : Federal Arbitrazh Court of Far East Circuit, 02/11/2010.

<sup>60</sup> CESL, 제76조.

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도 나열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계약 조건의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서류 해석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명시되어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에 해결 할 수 있거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서류 부적합의 보완

서류의 날짜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한 공업 원재료 사건<sup>61</sup>과 통관 서류의 미비로 인한 농업용 기계 사건<sup>62</sup>에서 CISG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바, 서류의 불일치는 계약 위반이지만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보완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물품 매매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CISG에서도 서류의 불일치는 명백하게 계약 위반이 맞지만 매도인에게 부적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sup>63</sup>고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청구권은 물품의 부적합을 바탕으로 하는데 CESL에서도 매도인의 의무가 불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면 매수인은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보류, 대금 반환 청구, 대금 감액,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sup>64</sup> 매도인은 보완을 위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치유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치유결과와 상관없이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CESL에서는 “계약

---

<sup>61</sup>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sup>62</sup>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sup>63</sup> CISG, 제46조, 제3항.

<sup>64</sup> CESL, 제106조 제1항.

당사자의 실수가 있거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계약을 회피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표현과 부정확성은 서류를 보낸 사람의 실수로 간주해야 한다.”<sup>65</sup> 고 사소한 하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의 치유가 매수인에게 과하게 부담이 된다면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sup>66</sup>

농업용 기계 사건을 하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지만 CESL 규정에 근거해 살펴보면, 사업자들 간에 거래를 할 때 당사자들은 주요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고 사례와 같이 매수인은 매도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통관 서류의 미비를 과연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통관 서류의 미비는 하자 보완의 유무 이전에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되어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앞선 사례에서 CISG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대법원 판례<sup>67</sup>를 CISG와 CESL 규정으로 살펴보면, 계약에서 정한 서류 대신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CISG는 매도인의 치유와 관련한 규정이 있어 충분히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CESL 또한 그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보완을 위해 합의된 기간 내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당사자들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대체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판결과 같이 CISG와 CESL의 규정으로 적용하였을 때도 충분히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sup>65</sup> CESL, 제48조 제3항.

<sup>66</sup> 심갑영, 심종석, 전제논문.

<sup>67</sup>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3726.

CISG 제34조는 교부 시기 전의 서류 제공 하자 보완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ESL이 서류 제공 하자 보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서류 관련 규정들을 살펴 보았을 때, 매도인이 부적합 사실을 통보 받은 후에 지체없이 자비로 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계약 전 정보 제공과 관련한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CESL이 명확하지만 하자 보완 규정에 있어서는 CESL보다는 CISG가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앞선 사례들도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보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면 분쟁 없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서류제공의무 위반의 구제

서류제공의무와 같이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CISG와 CESL 모두 매도인의 이행유보권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의무의 불이행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CESL에서는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의 유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도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상당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CISG도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관하여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동안에 추가기간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sup>68</sup>

거리계약, 사업장 외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할 때나 물품의 특성상 정상적으로 우편으로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가 물품의 반품

---

<sup>68</sup> 심갑영, 심종석, 전제논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 반품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본다. CESL에서는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CISG의 구제권은 서류제공의무에 대한 구제보다 매도인의 의무 위반, 물품인도 위반에 대한 구제로써 명시되어 있다. 서류제공의무가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되는 의무이기는 하나, CISG는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관한 구제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서류 제공'에 관한 구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는 있지 않다. CESL에서는 제29조에 정보 제공 업무 위반에 대한 구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조항에 있는 구제책들은 다른 조항에 있는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처럼 CISG와 비교하였을 때, CESL에서는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관한 구제와 별도로 정확히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 분쟁의 법적 상황까지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 CISG와 CESL의 비교

	CISG	CESL
서류의 해석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중재지법에 따른다.	서류에 사용된 표현과 의미가 다르면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계약 당시 상황, 당사자의 행동, 관행, 관련 분야의 표현,

		<p>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 모두 고려하여 계약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서류의 작성 버전이 여러 개이며 어느 것 하나 권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문을 우선으로 한다.</p>
<p>서류부적합의 보완</p>	<p>서류 제공 시기 이전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기까지 서류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p> <p>서류 제공 시기 이후에는 매도인 자신의 비용으로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p>	<p>매도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치유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관해서 보류할 수 있다.</p> <p>계약 당사자의 실수가 있거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계약을 회피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표현과 하자로 인한 부정확성은 서류를 보낸 사람의 실수로 간주해야 한다.</p>
<p>서류제공의무 위반의 구제</p>	<p>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체수단(이행 청구권, 이행을 한 추가기간 지정권, 인도기일 이후 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감액청구권, 물품 일부의 불일치와 조기인도, 수량초과인도에 의한 하자보완 내지 물품수령의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p>	<p>매수인은 보완, 보류, 대금 반환 청구권, 대금감액권, 손해 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다.</p>

### 제3절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한 CESL과 비교하여 CISG의 서류제공의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서류제공의무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CISG에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모호성을 CESL의 조항 중 "계약 시 정보들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계약 전 관련 물품,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참고하여 보다 더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서류제공의무와 함께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한다면, 이후 계약 위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고 분쟁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CISG의 개정 시 제34조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아래에 서류의 해석, 서류 종류, 서류 제공 시기, 서류 제공 장소와 방법, 서류제공의무 위반 시 구제 등 부수적인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계약 당사자들의 서류 해석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의 부적합, 물품 증명 서류 등 다양한 분쟁 상황이 있었지만 CISG 제34조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CISG 서류제공의무는 간단명료하게 표기되어 있어 관행을 고려하여 이를 해석하였다. 이는 실무적인 환경변화에 유연할 수 있으나, 통일적인 규정 및 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 개정 시 기존의 의무 아래에 부수적인 조항들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CISG의 서류 제공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CESL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조항을 해석기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CISG는 시대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해석상 문제에 있어 CESL의 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ISG와 CESL은 속해 있는 국가는 다르더라도 국제물품매매라는 공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CISG와 CESL의 가입국이 많은 부분 겹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CESL에서 여러 조항에 걸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매도인, 매수인의 다양한 상황까지 고려한 정보 제공 규정들은 CISG 조항 해석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충돌과 불편함에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국가 간의 상거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물품의 이동과 더불어 서류를 주고받는 일은 계약에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물품을 이동시키고 거래를 하기 위함에 계약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계약에 관하여 관습, 계약 해석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간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CISG를 채택하게 되었다.

CISG는 국가간 통일매매법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지만 통일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그래서 CISG에서 명시적이지 않은 부분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그 동안의 관습·관행에 따라왔다. 일정한 주기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개정해온 Incoterms에 반해 CISG는 적용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CISG는 198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무역 상황은 상당 부분 다르다. 기술의 발전으로 물품 인도 방식도 다양해졌고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전자식 거래도 가능해졌다. 급속한 변화 속에도 거래를 할 때 서류는 여전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CISG 제34조 서류제공의무는 단순히 매도인의 의무만을 제시할 뿐, 서류 제공에 관한 방법, 장소, 시기, 종류 등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CISG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 인도 의무는 계약의 물품 운송 포함 여부에 따라 나뉜다. 물품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매수인이 물품 수령을 하지 않아도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물품 인도, 선적 수배에 이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매매 계약 후 물품과 관련된 서류들을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매수인이 계약 시 요청한 서류 등이다. 서류는 물품 인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에 물품 인도 의무와 서류제공의무는 밀접하다. 이처럼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 인도와 서류제공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의무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ISG

에서는 물품과 관련한 서류가 언제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합의, 관습, 관행에 따르거나 통상적으로는 Incoterms에 의하고 있다. Incoterms에서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는 각 거래 조건마다 제공되는 서류가 다르며 더 나아가 보완관련 정보 제공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Incoterms 조건들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며 CISG를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CISG와 Incoterms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분쟁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류제공의무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고 CESL 조항들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류가 미 제공되거나 불일치 판례를 보면, 중재지국의 법을 위반했고 서류를 중재지법의 언어로써 보완하지 않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CISG에서는 중재지국의 법률을 따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거법을 기준으로 사례를 판단하였을 때 서류상 해석들이 불일치하여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CESL에서는 언어의 불일치에 있어 계약 서류의 원문이 우선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류가 불일치하지만 보완이 가능한 판례를 보면, 서류의 하자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며 물품 매매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CISG에서는 합의된 기간 안에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CESL은 계약서의 표현과 부정확성은 보낸사람의 실수로 간주해야 하며 회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품질 증명서, 기술 서류 등 물품의 품질을 증명해야 하는 판례와 관련하여 CISG의 조항에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고 판단된다. CISG에서는 단

순히 서류 제공만을 명시하고 있어 서류제공의무의 위반여부만 판단 가능하고 상세한 서류의 종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CESL에서는 계약 이전에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자는 모든 세금, 비용, 물품의 특성, 계약 조건, 운송 시기, 철회의 권리, 신원, 주소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전자 형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CESL에서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실질적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ISG의 서류제공의무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CISG 규정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에 제정된 CESL의 서류제공의무를 CISG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명확한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CISG 제34조의 모호한 규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CESL의 조항들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류제공의무의 판례가 부족하여 일반화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ISG 제34조가 적용되는 서류제공의무 판례들은 계약 위반의 주요 사안이 아니며 부수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 따라서 서류의 하자 보완 가능성을 띄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CESL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나, 특정된 서류를 중점으로 비교하지 못하고 판례를 기반으로 CISG와 CESL의 조항만을 비교연구했다. 향후 특정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서류제공의무를 비교하며 계약 위반과 관련한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구제수단 규정 비교를 위해서는 물품, 통지를 비롯한 연구범위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세히 서술하지 않았다. 향후 통지와 물품을 포함한 면책까지 연구하여 범위를 확장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 < 국내연구 >

김중길,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유럽공동매매법(안)과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3), 2015, pp.45-91.

김재성, 박세훈, 윤동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47(0), 2010, pp.49-78.

김상만,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 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0(102), 2011, pp.127-160.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교부서류에 대한 엄격일치원칙의 적용가능성 연구”, 무역상무연구, 51(0), 2011, pp.187-210.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CISG와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60(0), 2013, pp.3-26.

박영복,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 공동매매법에 관한 규칙」, 외법논집, 37(3), 2013, pp.37-62.

박희호, “유럽공동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9(2), 2015, pp.417-438.

신정식, “국제무역거래에서 서류조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54(0), 2012, pp.99-122.

심갑영, 심종석, “유럽공동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0(4), 2015, pp.51-72.

심종석,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4(2), 2012, pp.335-370.

오석웅, “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5(0), 2016, pp.131-155.

오원석, “매도인이 제공하는 인도증빙서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00을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14, 2000, pp.7-35.

이천수, 이양기, “CISG에서 당사자의 구제권 선택 및 행사상의 제문제” ,  
산업경제연구, 16(1), 2003, pp.227-247.

임형택,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 법학연구, 59, 2015,  
pp.117-146.

조요셉, 김철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재고찰” , 국제상학, 32(1), 2017, pp.125-140.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해상화물운송장의 인도증명서류로서의 적합성” , 2010,  
해운물류연구, 26(2), pp.253-272.

허은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  
2011, 통상정보연구, 13(3), pp.459-485.

#### < 참조사례 >

CLOUT case 488 :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2/02/2002.

CLOUR case 549 : Provincial Court of Valencia, Sixth Division, 405/2003

07/06/2003).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CLOUT case 1037 : Barcelona Provincial High court, 24/03/2009.

CLOUT case 1110 :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15/10/2009.

CLOUT case 1128 : Supreme Court, 09/12/2008.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CLOUT case 1738 : Federal Arbitrazh Court of Far East Circuit, 02/11/2010.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3726.

대구고등법원 2017.09.08 선고 2016누5335.

